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24
----------	------

2016년12월19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0. 11. 김용석 의원(국민)
2. 회부일자 : 2016. 10. 12.
3. 상정일자 : 제271회 정례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사자의 높은 희생정신을 시민들이 기억하고 기리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적절한 장소에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두텁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

- 개정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사자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사회적 예우 차원에서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작은 기념비 또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음.
- 집행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사상자 지원사업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은 바, 특별위로금 이외에 기념표석 설치지원 실적은 없는 상황임. 참고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의사자는 80명(의상자는 58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최근 3년간의 의사상자 지원사업 현황

(단위: 건/ 천원)

연 도	사 업 명							
	특별위로금 지급						기념표석 설치 지원	
	의사자		의상자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3년	38	1,140,000	35	159,750	73	1,299,750	-	-
2014년	35	1,050,000	20	44,750	55	1,094,750	-	-
2015년	5	150,000	1	10,000	6	160,000	-	-
2016년	2	60,000	2	3,500	4	90,500	-	-
계	80	2,400,000	58	218,000	138	2,618,000	-	-

※ 특별위로금은 '13년부터 최초 지급하였으며, '13년(73건) 및 '14년(55건) 지급건수는 이전 대상자('78~'12)들에 대한 소급건수가 포함되어있음

2 의사자 기념사업의 필요성 및 검토 의견

-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의사자의 숭고한 업적과 정신을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는 언론이 있어 왔음.
- 이를 반영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와 같이 기념표석 설치 실적은 전무한 반면

에 일회성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종료되는 바와 같이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는 바, 의인들의 희생정신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념사업이 미온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개정안은 상위법의 기념사업 근거를 조례상에 명시함으로써 서울시에 주소를 둔 의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위하여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기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의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우리 사회 곳곳에 의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의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안전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 갈 것이라는 점에 이견(異見)이 없을 것이라고 하겠음.
- 기념물을 설치하는 방식의 기념사업은 의사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존경을 표시하며, 후대의 귀감이 되는 점에서 개정안은 상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6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석(金勇錫)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4
----------	------

발의연월일 : 2016년 10월 11일
발 의 자 : 김용석(서초), 김광수(노원),
김진철, 김현기, 우창윤,
유 청, 이명희, 이신혜,
최관술, 최호정 의원(10명)

1. 제안이유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사자의 높은 희생정신을 시민들이 기억하고 기리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장이 적절한 장소에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자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두텁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를 제4조제5호로 하고, 아래와 같이 제4조제4호를 신설한다.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4. 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u>의사자의 유족과 협의하여 적절한 장소에 의사자를 기억하는 작은 기념비나 조형물의 설치</u></p> <p>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